

장성군 영양관리 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 번호 | 제214호 |
|----------|-------|

- 제안자 : 장성군수
- 제출일자 : 2026. 4.



1. 제정이유

- 지역 특성에 맞는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체계적인 영양관리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
-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및 영양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여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

2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규정(안 제1조 ~ 제2조)
- 군수의 책무 및 행정·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(안 제3조)
-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영양·식생활 조사 근거 마련(안 제6조)
- 사업 참여자 지원 및 인센티브 지원 근거 마련(안 제7조)
- 업무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근거 마련(안 제8조 ~ 제9조)

3. 관련법령

- 「국민영양관리법」 제8조, 제10조, 제11조, 제13조
- 「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」 제3조

4. 예산조치 : 해당없음 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: 불임)

5. 입법예고 : 2026. 3. 16. ~ 4. 5.(20일간) / 의견없음

6. 사전협의사항

- 부패영향평가 : 2026. 3. 24. 감사팀장 협의결과, 이견없음
- 규제심사 : 2026. 3. 12. 법무통계팀장 협의결과, 이견없음
- 성별영향평가 : 2026. 3. 24. 여성다문화팀장 협의결과, 성별 특성 등 반영 개선의견

7. 조례안 : 붙임

장성군 영양관리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영양관리법」 제8조제3항에 따라 장성군 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국민영양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① 장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군민에게 영양 및 식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·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·시행) ①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매년 영양관리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
2. 영양관리사업 추진계획
3.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및 관리방안
4.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 시 지역 특성 및 생애주기별 특성 및 성별에 따른 영양상태와 식생활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④ 군수는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5조(영양관리사업의 추진)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생애주기별 영양·식생활 교육 및 상담사업
2. 영양취약계층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
3. 만성질환 및 생활습관병 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
4.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영양관리사업
5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영양·식생활 조사) ① 군수는 군민의 영양상태 및 식생활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·단체 및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조사 결과를 지역 특성, 생애주기별 특성 및 성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고, 그 결과를 영양관리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참여자 지원)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

2. 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(지역화폐, 쿠폰, 물품 등)

제8조(업무의 위탁)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제9조(협력체계 구축)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 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관계 기관·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미첨부 근거 규정

- 장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
(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)

2. 미첨부 사유

- 본 조례안에 따른 영양관리시행계획은 군에서 직접 수립·시행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시행 자체로 신규 재정지출이 수반되지 않고, 필요한 업무는 기존 인력 및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수행 가능함. 또한, 지원사업은 근거 규정만 마련하는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 및 규모는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별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.

3. 작성자 : 건강증진과장

김영미 (서명 확인인)